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정보 제공의무〉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452호)

2022. 5.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정보 제공의무	2
※ 참고자료	10
1. 시중은행과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비교	10
2. 개인신용평가 결과 안내서(양식)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언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2. 1. 18.
3. 회 부 일 : 2022. 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정보 제공의무

□ 개정안은 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평가 항목, 항목별 기준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제4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0조의3(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정보 제공) ① 은행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평가 항목 2.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3.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신 설></u> <u><신 설></u> ⑤·⑥ (생 략)	----- -----. 1. <u>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은행</u> 2. <u>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은행</u> ⑤·⑥ (현행과 같음)
--	---

□ 현행 개인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 Credit Bureau)가 평가하는 개인신용평점과, 각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평정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신용등급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음.

○ 개인신용평점은 기존 1~10등급으로 산정되었으나, 2021년 1월 이후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를 도입하여 1~1,000점으로 세분화하였음.

○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경우 개인신용평점 주요 평가 요소 및 비중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주)NICE평가정보의 경우 상환이력(30.6%), 부채수준(26.4%), 신용거래기간(13.3%), 신용형태(29.7%) 등을 평가 요소로 하고 있고, (주)코리아크레딧뷰

로의 경우 상환이력(21%), 부채수준(24%), 신용거래기간(9%), 신용거래형태(38%), 비금융정보(8%)를 평가 요소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 그 외 금융회사들은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하여 자체 보유 내부 거래정보와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공한 정보 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있음.

○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은 전 국민(전체 신용거래인구)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척도인데 비해,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점은 해당 금융회사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예측하는 신용평점이며, 신청평점(Application Score)¹⁾과 행동평점(Behavior Score)²⁾으로 구분됨.³⁾

□ 이와 같이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과 은행에서 산정한 신용등급 간의 격차가 기존 등급제 기준으로 최대 5등급 수준까지 벌어진 사례가 확인되는 등 제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괴리된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 신용거래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점으로, 대출 승인여부나 신용카드 발급여부와 같은 신규 거래 개설의 의사결정에 활용

2) 금융기관과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마다 향후 부실 가능성을 다시 평가하는 신용평점으로, 대출 연장여부나 금리 변경, 신용카드 한도 상향 여부 등 결정에 활용

3) 출처: KCB 신용평가체계 개요(http://www.koreacb.com/kr/etc/policy_scoring)

있었고,⁴⁾ 은행 간에도 동일인에 대한 신용등급이 다르게 산정되어
이용자 입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음.⁵⁾

○ 2020년 하반기 시중 6개 은행⁶⁾의 신용대출 및 한도대출 사례에
서는 개인신용평가회사 1등급으로 평가받은 개인이 은행에서 5등
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평가된 경우가 4만 2,934건으로 확인되
었고,⁷⁾

○ 같은 기간 시중 6개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신용등급을 비교해보
면, 각 은행의 1~2등급에 해당하는 CB사 등급은 1.4등급에서
2.1등급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으며, 각 은행의 9~10등급에 해당
하는 CB사 등급은 5.8등급에서 6.9등급까지 분포하여 은행과 CB
사 신용등급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음.⁸⁾

□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신용평가회사(CB사)의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용도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현행과
같이 신용평가회사와 은행의 신용 평가 항목이나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신용 평가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
이 있다고 보임.

4) 조선비즈, ‘내 신용등급, 신평사는 1등급 은행은 4등급... 대출 혼란’(2020-04-08)

5) 아시아경제, ‘국민은행에선 3등급인 내 신용점수, 우리은행에선 1등급?’(2021-02-26)

6)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7) 매일신문, ‘신용평가는 1등급인데 은행 대출 땐 5등급, 왜?’(2021-07-01)

8) 구체적인 은행별 신용등급 비교는 【참고자료 1】 참조.

□ 금융위원회 또한 소비자에게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 및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정보 공개가 소비자의 신용관리 노력을 제고할 수 있고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신용자동화평가’ 관련 이의제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자동화평가’로 정의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해 자동화평가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주요 기준·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⁹⁾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다만, 금융위원회는 전반적인 평가 기준 및 결과 외에 은행별 신용평가시스템의 세부사항까지 공개하도록 할 경우, 신용평가시스템이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은행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하였음.

□ 은행연합회의 의견 또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구축·운영하면서 고객 또는 상품별 특화된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용평가의 기준이나 내용이 은행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며 이를 공개할 경우 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은행 간 상호 모방으로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권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시중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 새로운 금융소비자 발굴 등을 위하여 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성 분석·상권 정보·연금납부 정보·통신요금 결제·소액

-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제·부동산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금융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모형을 마련하고 있음.¹⁰⁾

- 특히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도 은행이 행하고 있는 신용평가가 대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화평가에 대한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은행 자체적으로 행하는 신용평가의 기준 및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이며, 이를 악용하여 저신용자가 자신의 신용평가 점수를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왜곡할 우려도 있다는 것임.¹¹⁾

- 한편, 2021년 12월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금액이 대부분(72.1%)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신용공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에 대해서만 신용평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업권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¹²⁾

10) 전자신문, ‘금융권, 하반기 ‘新 신용평가모형’ 쏟아진다’(2021-07-28)

11) 대출수요가 있는 금융소비자가 특정기간 맞춤 활동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개인신용평점을 향상시킬 우려가 있음(자료: 은행연합회).

12) 은행연합회 제출의견

[표 1] 예금취급기관의 월별 가계대출 현황(2021. 12월)

(단위: 백억원, %)

구분	예금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총 액
		상호저축 은행	신용협동 조합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기타	소 계	
금액	91,010 (72.1)	3,785 (3.0)	3,748 (3.0)	20,828 (16.5)	6,634 (5.3)	141 (0.1)	35,138 (27.9)	126,148 (100.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종합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개인에게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의 긍정적인 효과를 실현하면서도 각 은행의 경쟁력 및 영업비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 자동화평가 관련 정보 제공 규정¹³⁾ 등을 참고하여 실현 가능하고 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제공 범위 및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 이를 개정안과 같이 「은행법」에 규정하여 은행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인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법률에 규정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 또한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04

13) ① 자동화평가 결과, ②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③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 안내 양식은 【참고자료 2】 참조.

【참고자료 1】 시중은행과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비교(20. 하반기)

구 분		은행 등급				
		1-2등급	3-4등급	5-6등급	7-8등급	9-10등급
CB사 등급	KB국민은행	2.0	2.8	4.4	6.0	6.8
	신한은행	2.0	2.6	3.9	4.7	6.7
	우리은행	2.1	2.8	3.6	4.7	6.9
	하나은행	1.4	1.8	2.6	4.1	6.1
	카카오뱅크	1.7	2.3	3.6	-	-
	케이뱅크	1.6	2.4	3.3	5.2	5.8

【참고자료 2】 개인신용평가 결과 안내서(양식)

개인신용평가 결과 안내서

※ 동 양식은 예시이며, 은행별로 활용하는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경하여 활용토록 함

귀하가 xxxxx년 00월 △△일 당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귀하에 대한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개인신용평가의 기준 및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또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출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기존 대비 상향되거나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약정정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

- 평가 기준 시점 : 20◇◇년 △월 ○일(가장 최근 등급 평가 일자)
- 평가 대상 : 대출상품 명 등 기재(계좌번호 : _____)
-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귀하의 신용등급은 ____등급중 ____등급입니다.
- 단, 동 평가 결과는 대출 신청시 당사의 내부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로서 타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회사에서 평가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개인신용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

① 신상정보(반영비중 _____ %)

구 분	내 용	설 명	입수 경로
(예시) 은행별 내부 정보 활용			○○은행
(예시) 직장	○○은행		○○은행
(예시) 직위	과 장		○○은행

② 거래내용판단정보(반영비중 _____ %)

구 분	건 수(개)	설 명	입수 경로
(예시) 미상환 대출 총 건수	3건		NICE평가정보
(예시) ○○업권 미상환 대출 총 건수	2건		NICE평가정보
(예시) ○○업권 미상환 대출 총 건수	1건		NICE평가정보
(예시) 미상환카드론, CA 및 리볼빙 잔액 보유 기관수	1개		NICE평가정보
(예시) 미해지 신용카드 총 건수	3건		KCB
(예시) 최근 3개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건수	1건		NICE평가정보
(예시) 최근 6개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건수	3건		NICE평가정보

(앞 페이지에서 계속)

③ 신용도판단정보(반영비중 %)

구 분	건 수(금액)	설 명	입수 경로
(예시) 연체 총 건수	1건		NICE평가정보
(예시) 미해제 총 연체금액	10,000,000원		NICE평가정보
(예시) 대부업 30일 이상 연체 미해제 총 건수	3건		NICE평가정보
(예시) 최근 1개월내 경험한 최장 연체경험기간			NICE평가정보
(예시)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총 건수			NICE평가정보

④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반영비중 %)

구 분	금 액	설 명	입수 경로
(예시) 연소득정보	50,000,000원		○○은행

⑤ 기타 정보(반영비중 %)

구 분	건 수(금액)	설 명	입수 경로
(예시) 미해제등록 총 건수	1건		NICE평가정보
(예시) 미해제등록 총 금액	1,000,000원		NICE평가정보

20 . .

○○금융회사 대표이사 △△△

※ 유의사항

- 입수 경로가 당사가 아닌 경우, 해당 회사에 직접 정정·삭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NICE평가정보(주) : 02-2122-4000,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